

2020 아이올 베이비페어 신청서

(사무국)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 D13구역 | TEL 031) 995-6100 FAX 031) 995-6103 | iallbaby@naver.com

+ 참가업체 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 전시실무자 정보

전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FAX	
	직위:	휴 대 폰		E-mail	
회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FAX	
	직위:	휴 대 폰		E-mail	

+ 전시회 참가 정보 및 표기 사항 (표기명 중요!)

출품품목		출품품목	
간판명/도면표기	(기본부스 현수막 표기명)	/	(배치도 표기명 : 1부스 6자 이내)
출입증수량	개	초 대 장	장

+ 부스 · 부대시설 신청

	구 분	가 격	수 량	금 액 (VAT 별도)
부스 형태	기본부스	220만원	부스	₩
	독립부스	200만원	부스	₩
부대시설 ※ 독립부스 전기신청 필수!	전기(1Kw)	5만원	Kw	₩
	24시간 전기(1Kw)	10만원	Kw	₩
	인터넷(LAN/회선)	10만원	회선	₩
	급배수	20만원	개	₩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입계좌 : 중소기업은행 521-042812-01-014 / 예금주 : (주) 아이올

본 신청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기인(법인)은 뒷면의 참가규정에 동의하며 전시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아이올베이비페어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사무국)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 D13구역 | TEL 031) 995-6100 FAX 031) 995-6103 | iallbaby@naver.com

제 1 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 '아이올베이비페어'를 말한다. '주최 및 주관자'는 (주)아이올을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D13구역에 위치한 아이올베이비페어 사무국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신청서 효력)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와 참가비용을 주관자에게 제출 및 납입하여야 하며 참가비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참가신청이 완료된다.
2.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및 접수를 반려, 거부할 수 있다.
3. 본 참가신청서는 참가자와 주최자간 상호 합의된 계약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종료 후 참가업체의 품목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지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 개최 이전 시점에 배정된 전시면적 및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주최자의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참가자가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 손상을 입힐 경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참가비의 납입)

1. 참가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 역시 지정된 기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2. 참가자가 기간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납입한 참가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1.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 취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취소 시점에 따른 참가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
 -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참가비의 50%
 -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참가비의 70%
 -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참가비의 100%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지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의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부스내 음향 기구를 이용한 홍보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3.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의 전시를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전시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로 인해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중 발생하는 신청 면적내 장치물과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최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 10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